서울중앙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1가소2263563 손해배상(기)

원 고 안상구 (540809-1030917)

서울 서초구 방배1동 938-18 301호

피 고 박경민

파주시 조리읍 한라비발디아파트 119동 701호

변 론 종 결 201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11. 10. 26.

주 문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. 9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판사 정인재

716 0619

